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24.1.23. 공포)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8 신설)
- 나.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마련(안 제9조의9 신설)
-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안 제9조의10 신설)
-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11 신설)
- 마.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9조의12 신설)
- 바. 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의13, 안 제9조의14 신설)
- 사. 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9조의15 신설)
- 아.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따른 고지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동법 제33조의2에 의한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동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금융 마이데이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와 합의하여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
한 경우

제9조의9(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4.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
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10에 따라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0(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일괄변환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가. 본인확인기관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연계정보 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9조의12제1항 각 호에 관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정지,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나. 제공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가 얻는 편익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1(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3. 제9조의12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위반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의12(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① 본

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
2. 연계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위한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의 안전한 생성·처리를 위한 보호조치
4. 연계정보 생성 및 처리 사실확인자료의 기록·보관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연계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3.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조치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 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관
7.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의 구체

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13(실태점검의 대상)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건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건 이상 제공받거나 해당 기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균 매출액은 실태점검 개시일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

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태점검 개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다.

④ 본인확인기관 또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하였으나 회계실무관행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회계실무관행상 실태점검 개시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14(실태점검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본인확인기관 또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연계정보 관련 침해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연계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제9조의15(실태점검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는 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별표 9 제2호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2호의5	750	1,500	3,000
아. 법 제23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2호의6	750	1,500	3,000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로.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4	750	1,500	3,000
---------------------------------------	-----------------	-----	-------	-------

별표 9 비고 중 “커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허목과 노목)”을 “퍼목부터 보목까지의 규정(노목과 로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

표 9 제2호노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부과처분은 별표 9제2호로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8(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따른 고지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u> <u>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동법 제33조의2에 의한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동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u>		

<신 설>

사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금융 마이
데이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의하
여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
한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

제9조의9(연계정보 생성·처리 승
인 절차) ① 법 제23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
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
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
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처
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

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
· 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데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
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
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
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10에 따라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3
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신 설>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승인
에 필요한 서류,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9조의10(승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
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
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일괄변환의 필요
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
별성

2.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가. 본인확인기관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연계정보 처리 절차의 적
절성

3.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제9조의12제1

<신 설>

항 각 호에 관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정지,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나. 제공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가 얻는 편익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1(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3. 제9조의12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위반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의12(본인확인기관의 물리

<신 설>

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
2. 연계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위한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의 안전한 생성·처리를 위한 보호조치
4. 연계정보 생성 및 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관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연계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신 설>

3.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조치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 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관

7.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13(실태점검의 대상)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연계정보

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건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건 이상 제공받거나 해당 기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균 매출액은 실태점검 개시일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

도의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태점검 개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다.

④ 본인확인기관 또는 연계정보이용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하였으나 회계실무관행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회계실무관행상 실태점검 개시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신 설>

<신 설>

아니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14(실태점검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본인확인
기관 또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연계정보
관련 침해 사고 등이 발생하거
나 연계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
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제9조의15(실태점검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는 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연 락 처	(02) 2110 - 1645